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69호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27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3086호, 2015.1.28. 공포, 2015.5.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으로 변경함

3. 의견제출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“정보공개-행정 입법예고”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

(전화 : 042-481-4576, Fax : 042-472-6958)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”을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12제1항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 ①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 ①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4조제1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